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15~44
----------	---------

발의일자	2015. 6. 19.
발 의 자	이성복, 박희순, 김향란, 권재경, 강철우, 형남현, 변상원 의원

1. 제안이유

○ 거창군과 거창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라. 공공기관 등의 국어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사. 국어 활용능력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국어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6. 11. ~ 6.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과 군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거창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